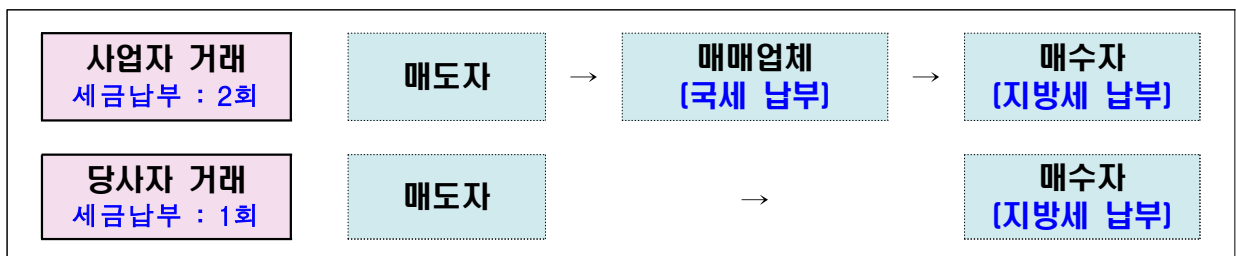
 안전행정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주 민 과
	2013년 12월 10일(화) 석간 (12.10 10:00 이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담 당	과 장 김명선 주무관 권혁배
		연락처	02-2100-3979 02-2100-3997

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 · 주민번호 · 주소 반드시 기재해야

-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

-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.
- 안전행정부(장관 유정복)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(화)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,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(속칭 '대포차')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.



-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.
- 하지만,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.
 - ※ 개인사업자인 자동차딜러는 중고차 매매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(자동차 매도자와 딜러 간) 매 자동차 거래건당 30만원 내외 또는 자동차 매매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매업체에게 수수료를 납부함
 - 즉,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.
 - ※ 국세청 추산 매년 780억 원의 세금 탈루
 - 이를 막기 위해,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.
- 이에 따라,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주소(법인소재지)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.
 - 한편, 국토부는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개정(2014. 1. 1 시행)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「자동차등록규칙」 개정을 추진 중이다.
-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참고 1

현행 및 개정 인감증명서 비교

현 행	주민등록번호		인감증명서		본인	대리인	
	성명 (한자)	()	인감				
	국적 (외국인)						
	(생략)						
	부동산 매수자	성명 (법인명)	“ 빈 칸 ”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“ 빈 칸 ”		
		주소 (법인소재지)	“ 빈 칸 ”				
	(생략)						
	사용용도	자동차매도용 : 매수자 홍길동, 130704-0000000					
	개 정	주민등록번호		인감증명서		본인	대리인
		성명 (한자)	()	인감			
국적 (외국인)							
(생략)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산 매수자		성명 (법인명)	홍길동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130704-0000000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 매수자		주소 (법인소재지)	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				
(생략)							
사용용도		“ 빈 칸 ”					